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합뉴스사 및 뉴스통신진흥회 운영 제도 개편 〉
■ 손술·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2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연합뉴스사의 편집 관련 제도 개편(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4
2. 연합뉴스사의 위탁 업무 수행 비용 보전 방식 변경(안 제20조)	9
3.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추천단체 다양화(안 제26조)	12
4.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결격사유 강화(안 제28조)	17
5.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 방식 변경 및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안 제29조, 제30조의2 신설 등)	21
※ 참고자료	2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솔·이주희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4. 17.

다.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편집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 나.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면하되,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 다.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20조).
- 라.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은 11명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 · 한국신문협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언론학회 등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26조).
- 마.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28조).
- 바. 이사회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 기간동안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이사회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제6호 신설).

아.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임직원 위원과 국민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합뉴스사의 편집 관련 제도 개편(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편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편집규약의 제정·개정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편집책임자의 임면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u> ④ (생략)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 ----- -----그 밖에 <u>수용자권익위원회의 구성</u> ----- -----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

현행	개정안
사는 편집위원회를 <u>둘 수 있다.</u> ② <u>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u>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u>두어야 한다.</u> ② <u>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1. <u>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u> 2. <u>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u> ③ <u>연합뉴스사는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면 등) ① <u>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면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편집책임자는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u>

현행	개정안
	<u>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책임자 및 임면 동의를 갖는 편집분야 직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한다.</u>

현행법¹⁾은 연합뉴스사가 수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²⁾ 편집권의 독립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편집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한편,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⁴⁾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受容者)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연합뉴스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수용자권익위원회는 외부인사 9인과 연합뉴스 임직원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합뉴스 사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연합뉴스 내부 편집규약에 따라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는 연합뉴스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의식 하에,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수용자권익위원 위촉 방식,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책임자 임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연합뉴스의 편집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편집 독립성이 강화되고, 편집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종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방송법」 5) 역시 개정안과 유사하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연합뉴스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간 단체협약에 따라 편집인을 편집총국장으로 하고 있으며, 사장이 편집총국장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기자직 사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5)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도책임자의 임명에 관하여 보도분야 종사자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연합뉴스 편집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편집위·편집규약은 자율규범 체계에 해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2. 연합뉴스사의 위탁 업무 수행 비용 보전 방식 변경(안 제20조)

개정안은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u>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u> <u><신 설></u>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① ----- ----- ----- ----- ----- ----- <u>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純費用)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순비용의 산출 방식 및 정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⁶⁾은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 등의 사업⁷⁾에 대하여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대학·공공도서관·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국제친선·문화교류·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대외뉴스통신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에 대한 비용 지원 방식을 순비용 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합뉴스의 재정적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⁸⁾한 상황에서 정부의 순비용 보전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저해할 수 있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순비용 보전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8) <연합뉴스 예산 지원 현황> * 세부사업명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목적)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의 정보주권 수호,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 등 공적기능 유지
○ (내용) 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비용 일부 보전
○ (최근 5년간 예산) '22년 328억원, '23년 279억원, '24년 50억원, '25년 254.43억원, '26년 279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기획예산처는 비용 지원을 의무지출로 전환할 경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수 확대 및 추천단체 다양화(안 제26조)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연합뉴스사 임직원, 신문·방송 및 기자 관련 단체, 언론 관련 학회와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추천주체가 이사 추천과 관련한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 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7명의</u>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 ① ----- ----- <u>11명의</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u>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u>	④ ----- ----- ----- <u>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이사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임명된 것으로 본다.</u>
<u><신설></u>	<u>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u>

현행	개정안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며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text{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3 \times \frac{\text{해당 교섭단체 의석수}}{\text{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신설>	2.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뉴스통신 전문성과 뉴스통신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신설>	3.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신설>	4.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신설>	5.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6.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

현행	개정안
⑤ ~ ⑧ (생략)	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현행법⁹⁾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설립 등) 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⑧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진흥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과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각각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진흥회 이사 선임과정을 감안할 때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고, 연합뉴스사의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¹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0) 국회에서 2026년 2월 26일 개최된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 필요 의견이 제기되었음

*자료: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국회 토론회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 ‘공감」, 연합노보, 2026.3.6.

또한, 이 외에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2025년 12월 연합뉴스 전체 구성원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8%가 진흥회 이사 확대를 통한 정치후견주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 자료: 「연합뉴스 구성원 67% “진흥법 개정 필요”... 1순위는 ‘재정안정화」, 미디어오늘,

이에 개정안은 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연합뉴스사 임직원, 언론 관련 단체와 학회 및 수용자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 추천 절차와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진흥회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통신진흥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연합뉴스사의 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정부와 연합뉴스사 지분의 약 70%를 보유한 신문·방송사의 이사 추천권을 유지하고, 연합뉴스사 임직원 및 학회를 추천권자로 추가하여 이사 추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¹¹⁾하고 있는바,

동 의견을 감안하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수를 개정안과 같이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되, 연합뉴스사 임직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12.19.

11) 문체부 수정의견

<뉴스통신진흥회 추천 주체>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현 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의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총 7명 -국회 3명, 대통령 2명, 신문협회 1명, 방송협회 1명 추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총 11명 -국회 3명, 연합뉴스 임직원 2명, 신문협회·방송협회 각1명, 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각1명, 언론학회·방송학회 합의 추천 1명, 수용자권익위원회 1명 추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총 11명 -국회 3명, 대통령 2명, 신문협회 1명, 방송협회 1명 추천, 연합뉴스 임직원 2명,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2명

4.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결격사유 강화(안 제28조)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정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정 기간 내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 등을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

현행	개정안
	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¹²⁾은 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

1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합
뉴스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연합뉴스사 임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결격
사유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에 대한 결
격사유를 확대하여 정당 활동 경력, 공직 경력 및 대통령선거 관련 이
력 등에 따른 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정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와 일부 중복되고 결격기간
등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에서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에 대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므로 이 역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현행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중복되고 결격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고, 진흥회 임원 결격사유 조항에 연합뉴스 대표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 역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연합뉴스 대표이사 추천 방식 변경 및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안 제29조, 제30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경영계획 발표, 면접 및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후보자를 의결하고, 기간 내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쳐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신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

현행	개정안
<u><신설></u> ⑤ ~ ⑦ (생략)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신설></u>	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에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0조(이사회의 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으로 한다. 1. 임직원 위원: 연합뉴스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직

현행	개정안
	<u>종·근속연수·근무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사람</u> 2. 국민 위원: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된 사람 ③ 이사회는 <u>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④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u>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회의는 <u>위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개의한다.</u>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 ⑦ 이사회는 국민 위원 구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

현행	개정안
	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현행법¹³⁾은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절차 등 국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

1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으로 대표이사후보자를 의결하도록 하고, 기간 내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쳐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와 대표이사 추천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연합뉴스는 공영방송과 달리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사로서 1차적인 고객이 국민이 아니라 언론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이 아닌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체결한 언론사 및 언론 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의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동 수정의견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기획예산처 (‘26.5.14)	•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개정안 삭제 - (의무지출 전환 실익 미비) 미디어 환경 변화와 현행 지원체계 감안 시 의무 지출 변경 필요성 미흡 → 의무지출 전환시 재정 경직성 심화 우려 * 다양한 대체 채널 등 미디어 환경 변화, 현재 규정으로도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26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 이미 53.5% 수준 - (타 기관과 형평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KBS, EBS, 국악방송 등에 지원은 임의 규정 → 연합뉴스 지원 의무 규정 시 유사 입법 확산 우려 - (효율적 사업 수행 유인 약화) 의무 지출은 사업 수행 성과가 미흡 하더라도 비용 보전에 따라, 사업 체계 개선 노력 약화 가능성
법무부 (‘26.7.16)	• 뉴스통신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제28조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결격사유 보완검토 - (결격사유 적용 대상) 뉴스통신법 제9조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편집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에 대해 제9조를 준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8조 뉴스통신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면서 적용 대상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가하는 한편 제9조 및 제16조는 현행대로 유지함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제9조, 제16조, 제28조가 모두 적용되는데, 안 제28조는 제9조, 제16조와 다른 내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어떤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 다소 불분명 - (결격사유 범위) 안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각각 뉴스통신법 제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데, 제9조와 제33조에 각각 규정된 결격사유 간의 관계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수범자로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임. 뉴스통신법 제9조1항제4호의 경우 5년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이 특별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뉴스통신법 제9조(결격사유 등) 4. 방송법 등(생략)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방송법 등(생략)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안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제9조 제1항만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호응이 맞지 않는 측면
--	--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연합뉴스사 (‘26.5.4.)	• 편집위원회가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제18조의2): 삭제 또는 수정 - 정관에 따라 수용자권익위 명문화하고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중, 법률로 위원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침해 및 과도한 공적 개입 우려 - 수용자권익위는 수용자 중심 자문기구인 반면, 편집위는 노사협의로 구성된 내부기구로, 편집위 추천으로 수용자권익위원 위촉 시 역할 분담 및 견제구조 약화 등 우려 •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강제(제18조의3): 삭제 또는 수정 - 신문법 제4조가 보장하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 침해 소지, 편집위와 편집규약은 본질적으로 언론사 내부의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 규범 체계에 해당하므로 과잉입법 - 방송법이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은 방송이 허가·재허가, 방송평가, 심사·제재 체계와 결합된 고도의 공적 규율 대상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뉴스통신에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곤란하여 편집규약 대외 공표 의무화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약을 근거로 편집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 • 편집책임자 임면(제18조의4): 삭제 또는 수정 - 매체 성격과 규제 체계가 다름에도 방송법상 규율을 뉴스통신사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 입법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연합뉴스는 이미 내부 편집규약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편집책임자 임면 절차를 규정. 현행 자율 규범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제도적 실익 크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 내부 운영과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 • 연합뉴스 비용 보전(제20조): 삭제 또는 수정 - 공적 책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다만, 보전 방식과 산정 기준은 미디어 환경, 공적 네트워크 운영 범위, 실제 비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 - 현재 순비용 산출 방식은 연합뉴스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예산 삭감으로 공적기능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순비용 조항이 공적기능 원상복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실질적인 순비용이 보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하며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비용 변동요인 반영 필요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확대등(제26조): 삭제 또는 수정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 현행법은 '03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률로 이사회 구성에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고려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 주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부 의원 주도로 이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균형성 한계 - 경영감독기관 이수 수를 11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회사규모와 실제 경영구조에 비추어 비례성을 벗어날 소지 - 수용자권익위에 추천권 부여는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와 경영 감독기관인 진흥회 간 역할 구분이 흐려지고 수용자권익위의 독립적 비판·견제 기능 약화 우려, 또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 방송학회 등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한 사장후보 추천 제한(제30조의2): 삭제 또는 수정 - 방송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체 성격과 법적 규율 방식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연합뉴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지배구조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위헌성 논란 초래 우려 - 민주적 정당성뿐 아니라 경영 판단의 전문성·책임성·계속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 중심 추천 구조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 이사회 및 대표이사등 경과조치(부칙): 삭제 또는 수정 -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할 뿐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임기 보장 구조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중대한 침해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신문협회 (26.4.30.)	• 뉴스통신 지배구조의 안정을 해치고 언론 경영의 자율성과 언론의 편집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 폐기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확대등(제26조): 운영 조직에 비해 감독 기구가 비대해져 조직 운영의 체계성 저해, 뉴스통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기자연합회 및 한국방송학회 추가 부적절 -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강제(제18조의3, 제18조의4): 연합뉴스 내부 편집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중,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한 사장후보 추천 제한(제30조의2):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상법상의 경영 원칙(주주제안권 및 이사회에의 권한)과 충돌 우려, 연합뉴스 주주인 신문·방송사의 정당한 권리 침해 위험성 상당(상법상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및 이사회에의 권한(제393조)과 충돌) - 편집위원회가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제18조의2): 수용자권익위는 수용자 중심 자문기구이며 편집위는 내부기구, 편집위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 위촉할 경우 내부 경제 기능이 약화되고 법안이 전제한 역할 구분 흐려질 우려 - 이사회 및 대표이사등 경과조치(부칙): 제18조의2 및 제29조가 정당성이 상실돼 폐지돼야 하는 만큼 삭제

□ 연합뉴스 개요

- **(연혁)** 연합통신 창사(동양통신·합동통신·기타통신사 통합, '80.12), 연합뉴스로 사명 변경('98.12)
- **(법적지위)** 뉴스통신법상 국가기간(基幹)뉴스통신사*, 상법상 주식회사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적기능 수행 비용 일부 정부 지원('26년 기준 279억원)
- **(소유구조)** 뉴스통신진흥회(대주주) 30.77%, KBS 27.77% 등

구분		주식수	지분율(%)	비고
뉴스통신진흥회		61,000주	30.77	
방송사 (18개사)	K B S	55,055주	27.77	
	M B C	44,217주	22.30	
	지방MBC(16개사)	4,811주	2.43	0.04%~0.33%
	소 계	104,083주	52.5	
신문사 (18개사)	중앙지(9개사)*	23,421주	11.82	0.46%~1.84%
	지방지(9개사)**	9,737주	4.91	0.31%~0.92%
	소 계	33,158주	16.73	
합 계		198,241주	100.00	37개사

* 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헤럴드

**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충청일보, 강원일보, 전북일보

- **(조직)** (조직) 2실 5국 1본부 2센터 1위원회 1교류단 / 임직원 764명(기자556명) / 해외취재망(19개국 22지역(미국 4개 지역)) 36명
- **(임원)** 황대일 사장, 상무이사 3명, 감사 1명
* 임기 : 2024.10.10.~2027.10.09.(3년)

□ 정부 지원 현황

- **(근거)** 「뉴스통신법」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20조(위탁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등
*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정부에서 관련 비용 부담 가능
- **(내용)**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가 정보주권 수호,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 등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기능 비용 일부 보전
*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지역뉴스(재해재난포함), 남북한·재외동포뉴스, 대외뉴스통신, 뉴스통신산업진흥(연합뉴스 경영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 지원) 등 6개

<'20년 이후 정부 지원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정부안
지원규모	319	328	328	279	50	254 (추경204 포함)	279	279
- 공적기능지원	288	297	299	250	50	254	279	279
- 뉴스사용료	31	31	29	29	-	-	-	-

※ 뉴스사용료(정부가 PC·모바일 등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는 '24년부터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